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7년 9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내부고발자 보고 강화해야"... 안민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 국민연금 "김영란법 위반 시 최대 파면"...내부 통제 강화
- 금융회사 '자금세탁 위험평가' 의무화...내부통제 강화한다
- 국토정보공사(LX), 전북 공공기관 청렴클러스터 협의회와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한국가스안전공사]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CSR 운영

3. 청렴 위반 사례

- 골프장 무기명 회원권 사용
- 타기관 체육대회 관련 의료지원

4. 지식마당

- 준법지원인제도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내부고발자 보고 강화해야"... 안민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른바 '내부고발자'로 불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본인이 시행한 공익신고로 인해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요구하면 권익위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조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폭행 규정에 관한 형벌을 형법 상 폭행 규정을 준용하여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 공익신고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보호를 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벌금 수납액과 출연금 등을 통해 재원을 모금한 후, 공익신고자 지원 및 보호에 사용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는 사정기관의 감사 및 감찰과 더불어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공익 침해를 밝혀내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가 법정 소송에 휘말렸을 시 국가가 책임감 있게 그들을 구제해 줄 법적 보호막이 없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폭행을 당했을 경우 형사상 폭행죄보다도 처벌규정이 미비한 법리적 불균형도 꼬집었다. 이에 안 의원은 "조속한 법률안 통과로,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행보를 결정한 내부고발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는 현실이 뒤따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708221659566237>

2. 국민연금 "김영란법 위반 시 최대 파면"...내부 통제 강화

국민연금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징계 규정을 신설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국민연금은 부정 청탁과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외부강의 등에 따른 초과사례금 미신고 또는 미반환'을 성실의무 위반 징계대상으로 더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의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등에 있어서 '갑'의 위치에 있을 때가 많은데, 부정 청탁 징계 규정이 신설되면서 운용역들이 외부 금융사 직원 등을 만날 때보다 신중하게 행동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징계 강도를 살펴보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의 징계 처분을 받는다. 위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인 경우 파면, 중과실인 경우 정직, 감봉까지 가능하다. 외부강의에 나갔을 때 받은 초과사례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도 해임되거나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직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0916>

최근 동향 및 소식

3. 금융회사 '자금세탁 위험평가'의 무화...내부통제 강화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 신상품 개발 등 모든 업무 관련 분야에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감사체계, 직원 교육 등에 있어서도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위한 필수사항인 '자금세탁 위험평가' 관련 내부 업무체계를 강화토록 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금융자산의 수입·매매·상환·발행, 대출·보험·보증 등), 신상품 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업무 관련 모든 분야에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업권별·영업형태별로 자금세탁 위험 유형이 달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분석·대응하는 내부 업무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방지 업무 담당부서와 관련 업무 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를 운영토록 했다. 또 금융회사의 임직원 교육과 신원확인도 의무화된다.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임직원이 연관된 자금세탁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채용·재직 중 신원확인 제도도 두도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 내부 통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각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1_0000091957&clD=10401&plD=10400

4. 국토정보공사(LX), 전북 공공기관 청렴클러스터 협의회와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난 5일부터 3일간 전북 공공기관 청렴클러스터 협의회 7개 기관과 함께 '제2회 청렴누리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국민 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공사임직원을 포함해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크게 3가지 색의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문화제 첫날에 열린 투명을 상징하는 '흰색(White) 섹션'에서는 청렴 다짐 퍼포먼스와 함께 청렴 공연과 실천토크, 청렴 역할극과 뮤지컬이 차례로 열렸다. 다음날 맑음을 상징하는 '파란색(Blue)섹션'에서는 전주한옥마을 소리관에서 마당놀이극 형식인 길거리 청렴연극을 관광객에게 선보였다. 마지막 날 깨끗함을 상징하는 '녹색(Green)섹션'에서는 전주 온빛초등학교와 만성초등학교 학생 900여 명을 대상으로 펼치는 어린이 청렴연극공연과 양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기 잘 보내기'라는 주제로 청렴세미나가 공사 주최로 열린다.

전북 공공기관 청렴클러스터 협의회는 국토정보공사를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병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7개 기관으로 이뤄진다. 2014년 9월 16일에 결성돼 내 반부패 청렴마인드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90600171>

윤리경영 실천 사례

[한국가스안전공사]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CSR 운영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주요 업무는 가스시설 및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와 점검, 안전교육 및 홍보, 안전기술 연구개발, 안전기기 보급, 기술컨설팅, 가스 사고 조사 등 가스안전과 관련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안전 전문기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윤리경영 목표 및 추진전략

미션 및 비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미션은 ‘가스안전 국민행복 실현’이다. 이는 가스안전 전문 기술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가스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가스와 관련된 사고가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가스안전공사의 의지를 나타낸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 Global Top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검사 및 점검, 진단, 교육 및 홍보 등 전 사업 영역을 통하여 가스안전 활동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비전은 세계최고 수준의 가스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궁극의 지향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스안전기술에 관해서는 Global Top 기술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CEO의 윤리경영 추진의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 현직 CEO들은 윤리경영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 현직 CEO들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지속 발간은 물론, 윤경 SM(윤리경영 Sustainability Management)포럼과 CEO 클럽 홍보대사 위촉, 윤리경영 CEO 서약 및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이행 등 윤리경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홈페이지 공개 및 인

트라넷과 SNS를 활용한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윤리경영 실천서약 등을 통하여 윤리경영의 의미 역시 강조하였다.

2. 윤리경영 활동 내용

윤리경영 성과프로세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윤리경영 성과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윤리경영 실행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는 쌍방향 윤리공감대 형성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로드맵 수립 윤리경영 종합 계획 1부서 1윤리 과제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리더, 윤리헬퍼 운영 Keep! Go! Stop! 프로그램 운영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윤리경영 종합 평가 (내부) 윤리 인식도 조사 (외부) 청렴 일기예보제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부서 포상(연) 우수사례 공유(연) 고객불만 해소(월)

[윤리경영 관리 체계]

자율실천 프로그램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윤리적 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실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및 실행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지식이 아닌 감성을 통하여 윤리경영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전사적 윤리경영 프로그램인 ‘Keep! Go! Stop!’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윤리활동을 내실화 함으로써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선순환적 윤리경영의

윤리경영 실천 사례

시스템을 만드려는 의도의 프로그램이다.

‘Keep! 윤리규정’은 부패방지법 제정 추진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만의 특화된 행동강령으로 임직원행동 강령을 39개 조문으로 확대 개정함으로써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내부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보상의 명문화 및 윤리규정 전담 조직 구축 등 적극적인 윤리 경영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Go! 윤리활동 확대’는 윤리실천서약, 국민퀴즈, 윤리활동 인지도 조사, CEO 가족서신 등 다양한 윤리활동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이해관계자 및 전 직원 참여 확대를 통한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기존의 딱딱한 윤리를 축제 형식으로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들을 추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윤리경영을 체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윤리청렴 페스티벌]

‘Stop! 부패사전차단’은 지난 2015년 청렴도인지 속적인 하락에 따라 고객의 불만요인을 사전 모니터링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시행되었으며, 이메일을 통한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패 발생요인에 대한 사전 알림 서비스인 ‘청렴 일기 예보제’를 실시하였다. 이 같은 사전 예방적인 활동뿐 아니라, 윤리실천 우수사례를 학술대회, 포럼 등에 발표하거나 매스컴과 SNS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다.

3. 투명경영 활동 및 성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중장기 감사전략을 설정하여 감사업무 선진화 및 전문화를 통한 내부감사 품질 강화 뿐 아니라, 감사의 윤리성 강화를 통한 청렴윤리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투명경영의 일환인 감사는 ‘감사 서비스를 통한 KGS 가치를 높인다’는 비전 아래 감사역량 고도화, 경영컨설팅 강화, 청렴윤리 문화정착이라는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감사 업무의 선진화와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청렴 윤리 문화의 정착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4. 사회공헌 활동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행복 나누기, 안전 더하기’라는 슬로건으로 사회공헌 선도를 통한 가스안전 국민 행복을 실현하고자 한다. 즉,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위한 나눔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사의 보유역량을 활용한 재능기부, 지역사회 기반의 상생활동, 서민생활 안정지원활동 등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추진을 위하여 단장(사장) 및 전담부서로 이루어진 전담조직을 두었으며, 본사 KGS 행복 나눔 봉사단과 교육원 및 28개의 지역별 봉사팀의 봉사조직을 두었다. 또한 간부의 개인 성과평가 평가지표에 봉사활동 참여율을 지표로 반영하는 등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사회공헌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양동훈, 고은정, 공공기관의 CSR 발전단계:한국가스안전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2015

청렴 위반 사례

1 골프장 무기명 회원권 사용

지방에 거주하는 직원 A, B, C 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골프장에서 법인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각자 비용을 5만원 씩 분담하였다. 골프장 회원이 아닌 비회원의 경우, 3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법인 무기명 회원권을 통해 25만원 상당의 비용을 할인 받을 수 있었다.

시사점 :

- ① 공직자 등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할인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
- ②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음.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 경우에도 공직자와 제공자 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금품 등이 제공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③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음.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에서도 정당행위의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준

2 타기관 체육대회 관련 의료지원

공공병원 소속 직원 간호사 A 와 응급차 운전기사 B는 타 기관의 체육대회 행사에 참여하였다. 간호사 A와 운전기사 B는 의료지원 요청으로 행사가 열리는 동안 발생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와 환자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에 해당 기관은 수고비 명목으로 총 2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시사점 :

- ① 사례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 ② 체육대회가 공식적인 행사일 경우,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허용

지식마당

준법지원인제도

1. 준법지원인제도의 개요

윤리경영의 부재와 내부통제의 부실은 기업 스캔들을 촉발시킨다. H항공의 땅콩회항, H약품의 늑장공시 등의 사례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들에도 윤리문화 촉진과 준법 통제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전부터 금융회사에는 1인 이상의 준법감시인 설치가 의무적이었으나, 금융회사가 아닌 일정규모 이상(자산규모 5000억 이상)의 상장회사에서도 2011년 도입되고 다음해 4월부터 시행된 준법지원인제도에 따라 준법통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준법지원인은 다음과 같은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1) 준법지원인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시행
- 2)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
- 3) 준법지원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출요구 및 진술의 요구
- 4) 임직원에 대한 준법 요구 및 위법 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 5)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청
- 6) 준법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이사회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 7) 준법 업무 보조 조직의 통솔 및 관련 부서 직원의 인사 제청
- 8) 기타 이사회가 준법지원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당 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해 중지·개선·시정 제재 등의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나 건의 전 준법지원인의 판단에 의해 해당 임직원에게 관련 행위의 중지·개선·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손해발생 예방 및 감소 등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이나 승진을 건의 할 수 있다.

2. 준법지원인 자격요건과 독립성

2.1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은 (상법 제541조의 13 및 동 시행령 제 40조)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3)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상법의 시행령은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2)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준법지원인은 이사회가 임면하며, 감사나 감사위원은 준법지원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준법 관련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근직이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식마당

2.2 준법지원인의 업무상 독립성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은 준법지원인의 업무상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 10조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했다.

- 1)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 회나 대표이사에게 직접, 적시에 보고할 수 있다
- 2) 준법지원인은 준법지원 및 통제 업무를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 내 직급을 가진다
- 3) 회사는 현재 또는 과거의 준법지원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준법지원인 제도의 현황

준법지원인제도는 준법지원인을 통해 회사가 겪을 수 있는 법률 분쟁을 최소화하고, 준법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이 윤리적 준법경영을 하도록 한다. 준법지원인제도가 취지대로 정착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법률 분쟁과 스캔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준법지원인제도가 개별기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기업에 부담만 주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재계는 준법지원인제도가 감사, 내부회계관리 등의 내부통제제도와 중첩되기 때문에 기준을 높여 대상 기업을 축소하고자 하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법조계는 투명한 준법경영을 위해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대상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대상 기업 304개 중 준법지원인 미선임 상태라고 답한 기업은 84개사였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123개사였다.(미응답 99개사).

이처럼 아직까지는 준법지원인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 공시서식 개선이나 준법지원인 선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준법감시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이수. (2012).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의 정당성과 개선방향, *CGS 보고서*
 김현. (2012). 준법지원인제도의 의미, *법률신문*
 민병두. (2015).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위반회사 88개사, *민병두 보도자료*
 박세화. (2015). 상장기업의 준법 경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준법 통제기준, *상장*
 손영화. (2012).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 *선진상사법률연구*
 신석훈. (2012). 준법지원인제도,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KERI Column*
 정재규. (2017).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CGS Report*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대상 기업	응답 기업		미응답 기업
		준법지원인 선임	준법지원인 미선임	
12년 4월	172개사 (1조원 이상)	69개사 (60%)	46개사 (40%)	57개사 (33.2%)
14년 4월	306개사 (5천억원 이상)	108개사 (49.5%)	110개사 (50.5%)	88개사 (28.8%)
15년 4월	304개사 (5천억원 이상)	123개사 (60%)	82개사 (40%)	99 (32.5%)

※상장회사협의회, 금융감독원 실태조사 결과

Quiz

1. 다음 중 준법지원인의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아닌 것은?
 - ① 준법지원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시행
 - ②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
 - ③ 임직원에 대한 준법 요구 및 위반 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 ④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 처벌 및 해고

2. 다음 중 준법지원인의 업무상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이 명시한 사항이 아닌것은?
 - ①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직접, 적시에 보고할 수 있다
 - ② 준법지원인은 준법지원 및 통제 업무를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 내 직급을 가진다
 - ③ 준법지원인은 독립성을 보장하기위해 외부기관에서 고용되어야 한다
 - ④ 회사는 현재 또는 과거의 준법지원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다음 중 각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② 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④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다음 준법지원인과 관련된 사항 중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이사회가 임명한다
 - ③ 감사나 감사위원은 준법지원인이 될 수 없다
 - ④ 준법 관련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① 지난 수 년간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2. 답 ② 시민단체 등 비정부 기구(NGO)의 영향력 증대로 인해 사회적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3. 답 ③ 법 준수를 뛰어넘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경제 사회, 환경 이니셔티브는 국제노동기구 (ILO) 이사회 정의이다.
4. 답 ④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효과는 우수인력의 확보 및 유지를 포함한다.

관련 행사

1. 권익위, 경기도의원들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항목은 △의회 현황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의원 직무관련 집행부 위원회 참여 내역 △의원 외부강의 등 신고내역 △의원 영리행위 신고내역 △의원 국내출장 내역 △의원 국외출장 내역 △의회 지출대장(자체 회계시스템 다운로드, 엑셀) △의회 물품취득원장(자체 회계시스템 다운로드, 자료작성일 기준, 엑셀)이다.

<http://news1.kr/articles/?3090520>

2. 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사학비리 3개월간 집중신고 접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오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집중 신고대상은 일 자리 창출분야를 비롯해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복지(요양급여·복지시설·어린이집), 농·축·임업, 사학 등 교육, 기타(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이다. 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사학과 관련한 부패행위도 집중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를 통해 직접 공공기관의 수입증대 등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을 지급하며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분 보호를 받는다.

<http://news1.kr/articles/?3089043>

3. 한전KDN, 전 직원들에게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한전KDN은 본사 빛가람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조직내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시켜 임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키우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에서는 부정청탁 유형과 금품수수 등 청탁 금지법에 관한 주요 사례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익명신고시스템을 소개했다.

한전KDN은 국민 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투명한 정부 3.0 실현을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전KDN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청렴정책 뿐 아니라 신정부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명한 제도를 발굴, 운영하기로 했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08986>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